

제418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4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요청안
-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1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청래 의사율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에 개회하기로 했으면 위원님들은 11시 정각에 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송 중계도 있고 1분 늦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검찰총장후보자(심우정)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안 들어오시나요?

김승원 간사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김승원 위원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회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불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김승원 간사께서는 일단 들어오셔서 본인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의견에 대해서 주장하시라고, 다시 들어오시라고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2651)

(11시03분)

○위원장 정청래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성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사 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관련 기관에서의 수사 방해와 외압 의혹 등을 규정하였고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후보자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는 특별검사보 3인, 파견검사 20인, 특별수사관 40인, 파견공무원 40인입니다.

수사기간은 70일로 하되 특별검사는 1회에 한정해서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에 더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양쪽 간사가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채상병 특검 법률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대표 출마 시에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에, 그 이후에도 제삼자가 추천하는 특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본인이 발의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그 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안을 다시 어제.....

김용민 위원님, 어제 발의했지요?

○김용민 위원 예.

○위원장 정청래 야 5당입니까?

○김용민 위원 예, 야 5당.

○위원장 정청래 야 5당이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가 제삼자 특검안을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총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채 상병 특검안도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제삼자 특검안을 주장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11년 만의 대표 회담을 통해서, 물론 이견이 있었지만 그 이견을 자꾸 좁혀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해서 소위로 보내려고 하는 민주당 당론 발의 채 상병 특검안도 저희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채 상병 특검안을 상정해서 소위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늦게라도 국민의힘에서 채 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안을 낸다면 바로 소위원회에서 병합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할 그런 자세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그런 주장을 들어오셔서 하시면 될 텐데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뚫고 이렇게 보이콧한다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위원들, 정부 여당입니다. 야당이 보이콧하고 이런 경우는 종종 봤어도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보이콧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님, 뭐니까?

○**김용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전 처리를 위해서 당연히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현재 공수처 수사로는 시간만 많이 끌고 있고 미진한 상태입니다. 인력 부족 그다음에 예산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사 외압 의혹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의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 열망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오늘 논의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당은 어디 간 것입니까? 여당이 이 현장에 없고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 주시기는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제삼자 추천, 여당 당대표가 국민들께 약속 했습니다. 제삼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은 수용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여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오늘 이 논의에 참여를 했어야지요. 책임 있는 여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야 5당이 함께 어제 제삼자 추천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이 원하는 걸

저희가 발의를 했으면 적어도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그동안 얼마나 기만해 왔던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보 조작도 추가하자라는 여당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보 조작으로 지목이 됐던 사람들이 모두 다 추가하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말을 뱉었으면 거기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고 이 논의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여당이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 토론할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오늘 여당이 그토록 하고 싶어 하는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청래 간사 보고에 의하면 채 상병 특검안은 상정을 반대한다, 그리고 경과 보고서를—왜 미리 예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오늘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려리 서는 것 아니냐, 들려리 서기 싫다, 그래서 못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아니, 본인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기 와서 주장을 하셔야지요. 토론하셔야지요. 그런데 미리 짐작하고 예단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들어오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우리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원만하게, 환노위 김문수 노동부장관후보자 같은 불상사가 그래도 여기서는 어제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다른 청문회에 비해서는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을 한 것으로 저는 평가하는데.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로 토론해 보고 그 차이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아예 그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이렇게 보이콧하는 것은 책임 있는 여당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지원 위원 의사진행도 되고,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의사진행발언을 하십시오.

○박지원 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김문수 장관 얘기를 하는데 왜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십니까?

기시다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으로 초청해서 윤석열 대통령 돈도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임 파티를 해 준대요. 잘하셨습니다. 제발 돌아가실 때 기시다 총리 전용기에 김문수 장관 좀싣고 떠나라.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니혼진으로 일본에서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한동훈 대표의 안을 대폭 수용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만약 이 법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면 개정안을 내라, 그러면 대안으로 함께 검토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여유를 보이시는 법사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당 위원들이 청문보고서 채택 때문에 안 오시더라도 이 법안은 1소위로 넘겨서 좀 기다리고, 1소위에서 숙의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서 토론하지 말고 1소위로 넘길 것

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청래** 박지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소위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미 공지를 했어요, 간사가. 그래서 오늘 이 대체토론을 하는 것도 소위로 보내기 위한 절차 과정입니다. 대체토론을 좀 하고 그리고 소위로 보내는 것을 오늘 의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당장 통과시키겠다, 표결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소위로 보내겠다, 그래서 소위에 가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라는 부분을 간사가 전달했지요?

○**김승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청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소위로 넘기는 것조차 지금 못 하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지금부터 소위로 넘기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토론을 그 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간사 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제가 임의로…… 5분 하면 되겠습니까? 5분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위원**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제도 위헌 소지가 많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야당의 추천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고……

○**박균택 위원** 그러면 옛날에 야당이 추천했던 특검, MB 정부 때 내곡동 사건,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사건이 있습니다. 야당이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했지요, 추천권을. 그 이유는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성과들을 거뒀던 전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법들도, 과거의 그 특검들도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케이스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이 이루어졌고 또 정부의 수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여당이 반대하면 다수결로도 통과를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좀 더 많은 숙의를 거쳐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국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수결, 192석을 가진 야권의 의원들이 합의를 해도 그 입법은 성사될 수가 없다는 것이 현 정부의 생각이군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과정이……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지금 한동훈 여당 대표가 얘기하는 제삼자 추천 특검 이것을 받아

들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한 대표가 말씀하시는 제삼자 추천안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서……

○**박균택 위원** 그 제삼자는 대한변협회장이나 대법원장을 얘기하는 건데 어제 야 3당의 합의로 추진했던 안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을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법원장께서 특검을 추천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대법원장께서 추천하실 때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추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늘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그 삼자는 도대체 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추천하면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는 여야 위원들께서 잘 합의를 하셔서 제일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는 많이 있는데 이것도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 중에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

○**박균택 위원** 그건 아니신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사 중인데 검찰에 송치도 되기 전 사경 단계에서 한 경우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이 문제가 있어서 특검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경우라서 그 논리는 타당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공수처라는 제도가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고 해서 일종의 특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거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공수처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한 기본 취지가 좀 몽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위원** 윤석열 정권이 언제부터 그렇게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높았는지 참, 상당히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특검법에 비해서 유일하게 특이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기간을 넘길 때 연장자를 임명된 결로 간주한다는 조항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전례가 없었던 조항인데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을 반년 가까이 안 한다든가 또 방송심의위원 임명을 거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반년 넘게 허송세월해 버리는 식으로 무력화시켰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약속을 하면, 법대로 추천해 왔을 때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이 조항은 없앨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만약에 위헌을 주장한다면 유일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법을 존중해 주겠다, 법에서 명령하면 그대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 이 정도 의사표시만 해 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 조항은 없앨 수 있겠다고 생

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 조항 하나만으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과 앞의 조항이 합쳐졌을 때 문제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야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거쳐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지금 특검법의 취지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검법을 실시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이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정권의 영향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 사안은 우리가 청문회에서 밝혔다시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매우 높습니다.

이 수사 외압이 대통령실의 7070 번호로부터 시작이 되고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에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전화를, 많은 연락을 하면서 실제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되고 그리고 경찰에 간 수사기록이 탈취되는 이런 과정이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시작이 됐고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번 채 해명 특검법 청문회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안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실상의 수사 대상자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이라든지 공수처가 과연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특검에 의해서 이 사안을 제대로 수사를 해라 이런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한동훈 여당 대표의 경우에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삼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 이런 것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제보 조작도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하면서 특검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야 대표 간 기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힘과 한동훈 대표가 마치 없던 사실처럼 지금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상 여당의 책임을 망각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상 권력의 핵심부를 수사하는 사안에 있어서 특검의 필요성 그리고 또 특검의 취지가 대통령을 향한 그런 의혹을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 측근들에 관한 수사 내용의 핵심인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이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를 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그 특검을 임명하는 이것은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할 소지도 매우 높고 특검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현재 역을하게 숨진 우리 채 해병, 우리 아들의 죽음의 진실 그리고

이것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과 국방부 수사단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권력의 핵심부, 과연 이것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보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은 여기에서 직무를 회피하고 빠지는 게 맞다, 그래서 야권이 추천하는 특검이든 아니면 제삼자가 추천하는 특검이든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관련된 의혹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특검을 임명한다든지 아니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전체적으로 이 특검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유사한 형태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다라는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부권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정청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대한민국에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군대 보낸 아들이 재해 복구를 하러 갔다가 물속에 들어가라고, 그것도 수륙양용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물살에, 물속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것부터 고쳐져야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장면을 보고 ‘참 잘하고 있구나’, ‘공보 활동이 잘되고 있구나’, ‘수풀을 찔러 가면서 찾아봐라’, ‘가슴까지 오는 그거 있잖아, 가슴 장화. 이런 거 신고 해라’ 등등 여러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그 지침하에 밑에 있는 포대장 등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물속에 아이들을 넣게 됩니다. 이 엄청난 물속에 아이들이 들어가고 그 아이가 물길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우리는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스무 살밖에 안 된 내 아들이 거기서 주검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포대장은 왜 구명조끼 하나 안 입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제기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보다 보니 구명조끼를 입힐 여유도 없었고,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갈 곳이 아니라..... 삽 들고 팽이 들고 복구한다고 갔는데 물속에 들어가게 한 사단장의 지시가 온갖 사방 군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송치…… 수사단장이 이 사람을 수사하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을 이거 범죄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경찰로 보냈는데 이게 안 된다며 경찰로 보낸 그 자료를 다시 전부 다 가지고 오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박정훈 대령 등 수사단이 수사해서 범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곧장 이첩을 했는데 그 이첩한 것을 다시 강탈해 옵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대법원장님!

강탈해 올 때 누구의 지시가 있었느냐면 국방부장관 이종섭의 지시가 있는 거예요. 이종섭은 가지고 오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보류하라고만 했다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걸 왜, 국방부장관이 수사하라고 해 놓고 수사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놓고 왜 갑자기 가지고 올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고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대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가 왔고, 800-7070 이 전화가 어디냐 봤더니 대통령실인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직접 명함 들고 어딘지 다 찾아봤더니 대통령실과 안보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대통령이 개입했구나 이렇게 되면서 또다시 전화 통신조회를 군사법원이 허락해서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대통령실 국방…… 대통령실의 무슨 비서관입니까? 모든, 안보비서관부터 전화를 수도 없이 해댄 겁니다. 아, 이거 대통령실이 개입됐구나.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수사합니까? 공수처가 하려고 백방으로 하는데 공수처에 압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채 해병 관련한 이 특검을 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이번 당대표가 제삼자 추천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내는 겁니다. 받아야 합니다.

제가 법무부장관께 말씀드릴게요.

‘야당 합의가 안 된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BBK,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예요. 내곡동, 새누리가 반대했어요. 그리고 세월호도 마찬가지고요. 대북송금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 관계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데 위헌이라고 말한 법무부장관의 팩트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가서 보세요.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대체토론 종결하고 이제 1소위, 심층 있는……

○위원장 정청래 대체토론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장관님과 천대엽 쳐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오늘 심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심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오늘처럼 11시에 그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러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를 정치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실제로 정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스스로 정치를 내팽개치는 일입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보이콧하는 것도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진대, 더군다나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그리고 본인들이 어쩌면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리 예단하고 겸찰총장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에 아예 불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참하셨지만, 내일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이 시간에 여는 것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간사들께서는 이 회의를 마친 이후에 내일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정청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박동찬
전문위원 이화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